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의 업데이트

2018년 10월



JAN

02

03

APR

05

06

JUL

08

09

OCT

11

12

콘텐츠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겠다. 다음:

1.



상품판매와 서비스공급 해주는 전자영수증(송장)에 대한 규정의령서 제119/2018/NĐ-CP호.

2.



VAT규정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제82/2018/TT-BTC 호.

3.



기업등록에 대한 일부 규정 변경, 보충의 의령서 제108/2018/NĐ-CP 호.

4.



연결거래의 +가격확정서류 작성을 면제되는 기업의 각 활동분야.

5.



적자영업시에 연결거래기업은 차입이자전부 出算하게 된다.

6.



자본금 불입(拂入)하는 대표자에게 수수료지급할때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공제한지?

7.



출장비용을 고정적 매월에 부과해주고 출장 유무를 구별하지않으면 개인소득세면제 되지않다.

8.



자연피해극복 지원금의 항목은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지못한다.

9.



예속사업 지점에 대한 세금 신고계산.

10.



외국 공사 계약자의 세금지급된 외국 파트너에게 결재 공제.

11.



삼입(합병)을 받으면 기업은 세금미지급의 잔여를 꼭 계승해야한다.

1. 상품판매와 서비스공급 해주는 전자영수증에 대한 규정의령서 제119/2018/ND-CP호 .

정부는 2018/09/12월에 의령서 제119/2018/ND-CP호 (“의령 119”) 를 최근에 발급해서 상품판매와 서비스 공급을 할때 전자송장에 대한 새 안내를 해준다. 의령 119엔 주목된 일부 중점들은 다음:



전자송장 사용을 위한 바뀐 작업의 완료 관련:

본 의령에 정부는 각 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 전자영수증진행을 늦어도 2020/11/01일 까지 해야하는 요구를 한다.

2018/11/01부터 2020/10/31일까지, 정부의 각 의령서 제 [51/2010/ND-CP](#)호 와 04/2014/ND-CP호 들이 아직 발효되고 각 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 영수증 주문, 스스로인쇄, 세무의구매후 발급통보를 하면 2020/1/31일까지 계속 사용하게된다.

2018/11/01부터 2020/10/31일 까지의 시간내 세무기관이 **Code**있는 전자송장을 적용으로 바뀐 통보를 해주지만 영업자는 아직 IT기술기초의 조건과 적응되지 못한 경우에 영업자는 세무기관에 송장의 정보를 본 의령서의 삽입 부록 03 처럼 보내주고 동시에 VAT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준다.



전자송장사용시작시에 종이 송장의 폐기 관련:

전자영수증(세무의 **Code** 유,무 포함)사용시점부터 각 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 재고로 사용되지 않는 종이영수증들을 다 폐기해야 한다.



종이 증빙으로 바뀌된 전자송장 관련

의령119엔 합법적 전자송장을 종이a증빙으로 바뀌준 규정을 한다. 바꾸는 작업은 전자송장과 종이송장의 내용을 꼭 맞아야한 보장을해준다.

바꿔준 종이영수증은 장부기록보관과 규정따라 검토의 가치만 있고 거래, 결재효력 이 없고 단, 송장이 세무기관과 전자 Data연결된 돈 계산기부터 제작된 경우들의 제외.



세Code 없는 송장 발급의 여러 영업자인 경우 관련:

다음 분야의 사업하는 영업기업들은 즉, 전력, 기름, 통신,운송, 급수, 신용재정, 보험, 의료, 전자무역사업, Mart-무역 및 각기업들이 미리,혹 앞으로 세무기관과 전자방법거래, 요구보장된 Software system 보유되면 상품, 서비스공급할때 세무의 Code없는 송장들 을 사용하게 되고 상품판매, 서비스공급매번의 가치로 구분 하지 않다. 구매자에게 보내 준Code없는 전자송장은 상품,서비스공급해준 사업자의 영수증이다.

그러나, 상기의 각 영업자는 세무의 큰 리스크에 속하면 세무의 세코트 있는 송장을 사용해야 하고 상품판매, 서비스공급의 매번 가치를 구분하지 않다.

그러나, 상기의 각 영업자는 세무의 큰 리스크에 속하면 세무의 세코트 있는 송장을 사용해야 하고 상품판매, 서비스공급의 매번 가치를 구분하지 않다.



2. VAT규정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제82/2018/TT-BTC 호.

재정부는 최근에 통지 제82/2018/TT-BTC호를 2018/08/30일에 발급해서 통지서 제 219/2013/TT-BTC호 규정의 일부를 취소한다. 이런 통지서는 재정부의 2013/12 /31 일의 통지219/2013/TT-BTC호의 제7조 10항, a4점에 규정된 예: No.34의 내용을 삭제 한다. 이런예의 삭제는 2013/12/31일 재정부의 통지서219/2013/TT-BTC의 제4조 6항에 규정된 VAT무부담의 대상인 토지양도권 내용과 일관성을 보장해준 목적있다.



3. 기업등록에 대한 일부 규정 변경, 보충의 의령서 제108/2018/NĐ-CP 호.

정부는 최근 2018/08/23일에 의령108/2018/NĐ-CP (“의령108”)를 발급해서 기업 등록에 대한 2015/09/14일 의령78/2015/NĐ-CP의 일부 조항을 변경, 보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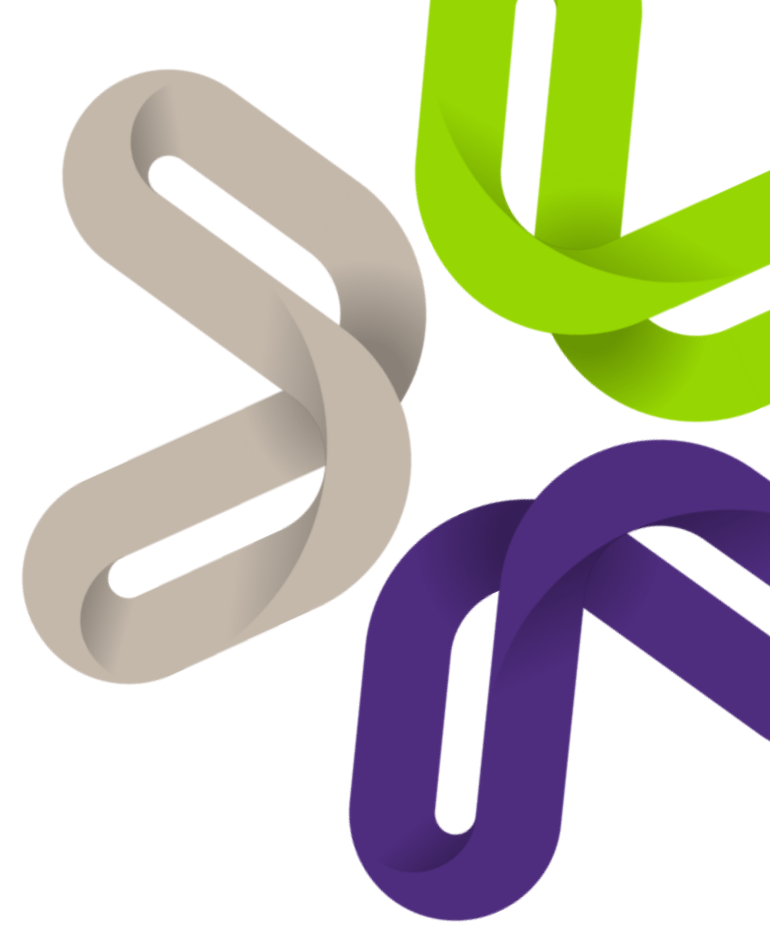
주목된내용중의 하나는 의령108은 다음 규정 보충: 기업들은 기업등록서, 등록내용 변경 제기서, 등록서중 회의록, 회의 결정, 안전서류등에 꼭 도장한 필요가 없다.

그외에 기업등록 절차집행을 위임된 개인의 경우는 절차진행시에 위임자는 기업등록 수속대신으로 진행된 다른 개인 위임 문서를 제출하지만 이런 문서는 공증하지않아도 된다.

영업장소관련은 의령108 엔 기업의 본사혹 지점의 주소가 있는 중앙 시.성에만 영업장소 설치공제를 취소 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하면 기업들은 각 시.성에 영업소를 설치해도 그지방에 사무소혹 지점설입을 할 필요없다.

그외에, 의령108 은 기업의 도장 표본을 통보하는 추가적 규정을 한다. 따라, 이런 절차는 **online** 통해서 진행될수 있고 영업 등록실에 서류들을 더 재출할 필요 없다.

또한 중요한 수속 하나는 전자망을 통한 기업등록, 공칭 자본금 변경, 자금 불입 바꿈, 창업 주주정보 변경의 기업등록내용 발표 등 은 이런 의령중에 변경된다.



4. 연결거래의 가격확정서류 작성을 면제되는 기업의 각 활동분야.

세충국은 최근에 문서3260/TCT-TTr 를 2018/08/23일에 연결거래 서류작성 면제에 대한 발급을 하고 그에 근거하면 간단 기능으로 사업하는 회사; 그의 활동이 다음 3 가지분야 즉, 상품 유통분배 혹은 생산, 가공(서비스공급자로 된 회사) 에 속하지않는 경우에 연결거래발생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금 관리 의령 제 20/2017/NĐ-CP호의 2017/02/24일예의 11조 2항 c목의 규정처럼 연결거래 가격확정 서류가 면제된 조건들을 만족하지않다. 때문에 이런 문서 따라 우리는 분배.생산,가공외(예. 문서중 서비스공급 하는 회사의 경우 처럼)의 다른활동분야들이 연결거래단가확정을 하는 서류작성 면제를 받을수 없다고 이해한다.

5. 적자영업시에 연결거래기업은 차입이자전부 出算하게 된다.

2018/06-15일 Hồ Chí Minh세국은 법인소득세 정책안내를 문서 5772/CT -TTHT로 발급한다. 그에 따라 연결거래 발생있는 회사인 경우에 기간중 치수 EBITDA 가 0 (zero) 보다 작으면 즉, 이익이 없다면 기중 차입이자비용의 전부를 出算으로 처리하게 되고 법인소득세 계산시에 공제비용으로 인정할수 없다.



6. 자본금 불입하는 대표자에게 수수료지급할때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공제한지?

Hồ Chí Minh 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 문서 5635/CT-TTHT로 법인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 따라 국영이 아닌 조직의 주주인 자본금분의 대표으로 BOM 성원자 (회사를 전문적 관리,운영에 불 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준때 200만 동/회이상 지급 하면 지출하기전에 소득상 10%기준으로 개인소득세에 공제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BOM성원들에게 지급해준 수수료는 노동계약서 없는 개인에게 수수료, 기타 지출로 본다.



7. 출장비용을 고정적 매월에 부과해주고 출장 유무를 구별하지않으면
개인소득세면제 되지않다.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5/30일에 문서4888/CT-TTHT 로
개인소득세안내를 한다. 구체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장비용
(숙식거주비,출장보조금)을 고정적 매월에 부과해준 경우에 회사의
규제혹 로동계약서에 구체적 지급기준과 수혜조건으로 반영 되면 그런
지급항목을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부담을 계산하지 않다. 그러나
출장비를매월 에 부과해준 경우에 회사의 규제혹 로동계약서에 구체적
방영되지만 근로자가 출장 유,무인지를 구별하지않으면 그지급항목을
개인소득세부담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고 규정처럼 세금 공제한다.

8. 자연피해극복 지원금의 항목은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지못한다.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7/10일에 문서6730/CT-TTHT로 자연피해 예방, 극복 지급금의 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안내를한다. 그에 따라로 관련법규정(정부 의령, 각급 인민 위원회문서등)에 다른 자연 피해예방, 극복 지급금의 각 항목들은 비록 근로 자의 봉급에서 공제된 필수가입금이지만 현행규정의 개인소득세부담 계산에 공제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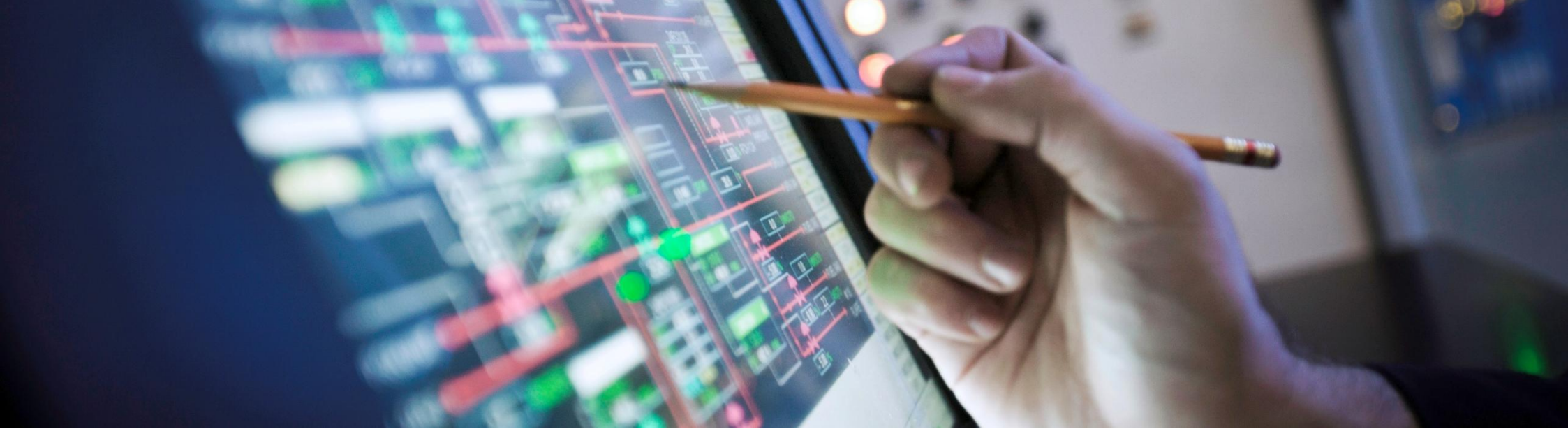




9. 예속사업 지점에 대한 세금 신고계산.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 문서5665/CT-TTHT로 세금계산신고를 안내한다. 그에 따라 회사는 이 지방에 지점을 설립하고 예속결재하고 매출의 발생이 있으면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스스로 VAT계산 신고 서류를 제출해 줘야하고 지점 이 직접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해주면 관리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준다. 예속 지점의 법인소득세항목은 회사에 의해 계산 신고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법인소득세 수혜받은 시간중의 지점 이면 회사가 지점의 생산영업 활동 부터 소득을 다로 계산, 납세하고 비용 비율로 그지방에 법인세의 납세분포를 할수 없다.



10. 외국 파트너에게 외국공사자의 세금납세 분의 지급공제 관련건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 문서5665/CT-TTHT로 공사계약자의 세금에 대한 세금정책을 안내한다.이런문세에 의해 회사는 외국 모회사에 서비스를 공급 해주고 합의 계약에 다른 서비스비용의 모회사로 선지급을 하고 베트남내 회사가 공제 (할 인) 항목을 지급하면 그할인 항목이 공사계약자의 세금 부담을 해야하고 막론, 부채 상환의 공제형식등으로 지급을 포함한다. 회사는 모회사대신으로 세금공제, 납세해 준다. 그중 법인소득 세율= 5%; VAT세는 세금계산신고 아닌경우에 공제되지 않다.

11. 예측사업 지점에 대한 세금 신고계산.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29일에 문서 6323/CT-TTHT로 회사합병을할때 세 정책 을 안내한다. 구체로, 삼입진행시에 합병당하는 측이 국세의무를 직접 세금 관리 기관 하고 결재 해야하고 합병하기전에 세금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합병당하는 기업이 세의무를 완료하지못 하면 합병 받은 회사는 합병당한 기업의 활동중지시점 까지 세금 결재 , 검찰된후의 세금에 대한 권한, 책임(납세해야한 금액, 공제세액, 납세잔금)을 전적으로 계승해 야한다. 합병당한 기업의 세무기관의 검사결과 에 근거해서 양측이 합병받은 측에 준 책임, 권한 인계인수문서를 작성해서 계승측이 계속 규정처럼 의무를 집행한다.

Contacts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외국인의활동,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大形 薫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満重 弘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唐牛 理任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